#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24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조승래·기동민·김영주

김철민 · 김태년 · 김홍걸

박영순ㆍ서영석ㆍ설 훈

이정문 · 장경태 · 장철민

최기상 · 최종유 의위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 관리체계가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

#### 법률 제 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 라. 제1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보호
  - 마. 제1항제5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의 확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	획의 수립) ①
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	
(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방송통신재난"이라 한	
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	
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	
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
	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u>자</u>
<u>&lt;신 설&gt;</u>	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 2. (생략)
-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 한 사항

가. ~ 다. (생 략)

<u><신 설></u>

<u><신 설></u>

4. (생략)

2
1. • 2. (현행과 같음)
3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제4호에 따른 데이
터센터의 보호
마. 제1항제5호에 따른 부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
 가통신역무의 확보

4. (현행과 같음)